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5 - 431호

의 안 명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제도 개선방안

대상기관 관세청

의결연월일 2015. 11. 23.

## 주 문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제도 개선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권고한다.

##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1월 23일

위원장	이성보	_____
위원	김인수	_____
위원	곽진영	_____
위원	홍성철	_____
위원	최학균	_____
위원	박창수	_____
위원	권태성	_____
위원	이학수	_____
위원	노재석	_____
위원	정갑생	_____
위원	양재영	_____
위원	이현수	_____
위원	김종보	_____
위원	허용석	_____
위원	전준경	_____

<별지>

---

#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제도 개선방안

---

2015. 11.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 목 차

I . 추진배경 .....	1
II .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	2
① 관련제도 .....	2
② 일반현황 .....	4
III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
① 휴대폰 검사시 여행자 권익보호 미흡 .....	6
○ 휴대폰 검사 법적근거 안내제도 도입	
○ 휴대폰 검사 전용공간 설치 의무화	
○ 여행자 성(性)별에 따라 검사담당자 배정원칙 도입	
② 휴대폰 유치 및 관세납부방법 불편 .....	9
○ 휴대폰 유치보관료 징수 사전안내 실시	
○ 체납관세 자진납부기회 부여	
○ 관세 납부방법 다양화	
③ 휴대폰 미신고자 처벌관련 기준 모호 .....	15
○ 휴대폰 미신고자 처벌관련 운영기준 마련	
IV . 조치사항 .....	18

# I.

## 추진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핵심과제 : 일상생활에 불합리한 관행근절
- ※ 최근 3년간(2012. 1. ~ 2014. 12.) 국민신문고에 총 242건의 고충민원 제기

○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는 대외무역질서 확립, 국내 산업보호, 총기류 및 유해 식·약품 단속 등을 통한 사회안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실시**

※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출입국자수는 총 6,165만명(입국 3,061만명, 출국 3,104만명)

○ 하지만,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함에 따른 권익침해**

- 여행 휴대품검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의 법적근거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지 않아 불만제기
-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함에 따른 여행자 권익침해

<연도별 여행자 휴대품 검사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검사건수		667(2.9%)	575(2.3%)	519(1.9%)
적발	건 수	456	404	386
	적발율	69.2	70.9	77.0

(단위: 천 건, %)

○ **여행자 휴대품 유치보관료 징수안내 미실시, 체납관세에 대한 자진 납부기회 미부여, 관세 납부방법 제한, 휴대품 미신고자 처벌관련 기준 모호 등으로 민원발생 및 부정부패 발생여지 상존**

※ 연도별 휴대품 유치건수: 2012년도 125천 건, 2013년도 135천 건, 2014년도 143천 건

○ 이에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편의도모 및 권익보호**

## II. 관련제도 및 일반현황

### 1 관련제도

#### □ 용어정의

- '간이통관'이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성별, 여행목적, 체류기간 등을 감안하여 전체 과세가격에서 1인당 600달러 면제하여 통관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여행자 1인당 면세금액 변화 현황>

시행일자	1987. 3. 24.	1988. 12. 1.	1996. 9. 13.	2015. 2. 16.
면세범위	10만원	30만원	US \$400	US \$600

- '자진신고제도'란 여행자가 휴대품신고서를 작성, 자진 신고를 통해 세관통로(세관검사, 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편의(신속통관, 신고 가격 인정, 세금사후납부)를 제공하는 제도

#### □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 □ 신고대상 휴대품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다만, 쿠리어 및 승무원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2. 제19조제2호 및 제42조에 따른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하여야 함
3. 상용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 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앵속·아편·코카인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6.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8.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9.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 그 밖의 식품류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액세서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11.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4.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 □ 처벌규정

구 분	위 반 내 용	처 별
금지품수출입	수출입금지품(음란물, 위조화폐, 채권 등)을 수출입	-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금지품 몰수·몰수 추징
밀수입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밀수품 몰수·추징
관세포탈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 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부정감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감면 물품의 관세징수를 면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
부정환급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벌금
부정수출입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입 또는 수입이 제한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수입	- (부정수입)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수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분할수입)3년 이하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밀수품취득 등	일수품(혹은 부정수출입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감정	- 3년 이하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밀수품 몰수·추징

## 2 일반현황

### □ 출입국자 현황

<2014년도 출입국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입 국	출 국	구성비	
계	계	64,652,158	30,614,046	31,038,112	100%
	승 객	55,316,870	27,635,118	27,681,752	
	승무원	6,335,288	2,978,928	3,356,360	
국 민	소 계	32,722,368	16,349,538	16,372,830	53.1%
	승 객	29,971,333	14,953,099	15,018,234	
	승무원	2,751,035	1,396,439	1,354,596	
외국인	소 계	28,929,790	14,264,508	14,665,282	46.9%
	승 객	25,345,537	12,682,019	12,663,518	
	승무원	3,584,253	1,582,489	2,001,764	

자료) 201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 항구별 입국자 및 출국자 현황

<2014년도 항구별 출입국자 현황(승무원 제외)>

(단위 : 명)

구 분	입 국			출 국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30,614,046	16,349,538	14,264,508	31,038,112	16,372,830	14,665,282
인천공항	20,528,066	12,313,128	8,214,938	20,553,305	12,351,574	8,201,731
김해공항	2,706,738	1,861,788	844,950	2,710,055	1,894,535	815,520
김포공항	2,120,617	1,051,704	1,068,913	2,126,390	1,004,284	1,122,106
제주	2,083,916	70,284	2,013,632	1,960,864	68,777	1,892,087
부산	1,054,297	492,690	561,607	1,260,224	491,110	769,114
인천	789,066	109,146	679,920	1,046,823	110,941	935,882
평택	277,902	119,011	158,891	278,036	118,192	159,844
청주	243,084	51,955	191,129	239,985	52,003	187,982
군산	80,594	37,431	43,163	80,293	36,297	43,996
대구	112,222	71,672	40,550	114,160	74,798	39,362
무안공항	74,770	42,735	32,035	73,604	43,565	30,039
오산	32,520	298	32,222	32,842	323	32,519
동해	43,788	18,777	25,011	41,834	17,435	24,399
광양	80,788	12,352	68,436	144,718	18,491	126,227
김천	64,332	5,668	58,664	67,228	4,840	62,388
속초	12,686	3,036	9,650	6,238	2,950	3,288
울산	83,558	34,232	49,326	82,083	30,043	52,040
여수	38,983	14,588	21,395	34,948	14,407	20,541
창원	16,792	4,575	12,217	16,782	4,679	12,103
거제	5,422	3,995	1,427	10,718	5,332	5,386
서산	18,233	11,446	6,787	14,142	11,367	2,775
포항	38,230	5,301	32,929	34,011	5,151	28,860
통영	4,410	3,106	1,304	4,382	2,180	2,202
목포	6,532	2,004	4,528	6,382	1,726	4,656
양양	90,928	4,120	86,808	90,046	3,515	86,531
기타	8,572	4,496	4,076	8,019	4,315	3,704

자료) 201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휴대품 검사시 여행자 권익보호 미흡

### 【현실태 및 문제점】

#### □ 휴대품 검사에 대한 법적근거 안내의무 미비

-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는 여행자가 불법으로 휴대품을 반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동태감시검사, 전자택검사(X-Ray), 사전지정검사(APIS,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등이 있음

- 하지만,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기 전에 검사의 법적근거 등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실시함에 따른 불쾌감 조성으로 불만제기

- 휴대품 검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나, 검사 전에 검사의 법적근거, 목적 등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임의로 검사를 실시함에 따른 불쾌감 조성으로 민원발생
- 여행자가 휴대품 통관검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요구하여도 이를 제시하지 않아 불만제기

※ 인천공항은 자체적으로 휴대품검사 안내리플릿을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하여 활용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당국의 검사 대상으로 우리나라도 세관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246조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All goods passing through a national border is subject to Customs inspection. Likewise, Customs officers in Korea are authorized to inspect all goods, based on the Article 246 of the Customs Act.

## □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품 검사 실시에 따른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 여행자의 휴대품(여행가방 등) 검사를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함에 따른 수치심 유발
  - 여행자 휴대품에는 성별에 따라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용품 및 물품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 휴대품 검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함에 따른 개인프라이버시(Privacy) 침해로 민원발생
- 휴대품 검사 전용공간을 국부적으로 설치·운영에 따른 권익침해에 노출
  - 휴대품 검사 대상자 중 연평균 72.5%는 휴대품 불법반입으로 적발된 반면, 휴대품 검사자의 27.5%는 무혐의자
  - 하지만, 일부 공항(김포, 제주, 인천공항 일부 등)을 제외한 통관검사장에는 휴대품검사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검사대상자의 권익침해 노출

※ 대부분의 항만 통관검사장에는 휴대품검사를 위한 전용공간 미설치

<연도별 여행자 휴대품 검사현황> (단위 : 천명, 천건,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검사	건수(A)	667	575	519	587
	검사비율	2.9	2.3	1.9	2.4
적발 (B)	유치	125	135	143	134
	과세	166	158	138	154
	검역	164	110	104	126
	조사	1	1	1	1
	소계	456	404	386	415
면세		206	167	128	167
기타(C)		5	4	5	4.7
적발률 (B+C)/A		69.2	70.9	77.0	72.5



<사진 1> 휴대품 검사장에 설치한 유리칸막이

- 여행자 휴대품 검사 시 성적(性的) 수치심 자극 및 여행자 프라이버시 침해로 민원발생
  -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여행자 성별에 관계없이 검사담당자를 배정, 검사를 실시함에 따른 성적(性的) 수치심 자극

## 【개선방안】

### □ 여행자 휴대품 검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 ○ 휴대품 검사 법적근거 안내제도 도입

- 휴대품 검사 전에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의 법적근거 · 목적 등을 구두 또는 안내문(리플릿) 등을 이용하여 사전안내 하도록 의무화
- 검사대상자에게 휴대품 검사의 정당성, 당위성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발생 예방
  -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또는 가칭 ‘여행자 휴대품 검사업무 지침’ 마련

#### ○ 휴대품 검사 전용공간 설치 의무화

- 휴대품 검사대상자가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검사 전용공간(칸막이 등) 설치 의무화를 통해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또는 가칭 ‘여행자 휴대품 검사업무 지침’ 마련

#### ○ 여행자 성(性)별에 따라 검사담당자 배정원칙 도입

- 여행자 휴대품 검사 시 가능한 여행자 성별에 따라 휴대품 검사 담당자를 배정, 검사를 실시하여 여행자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또는 가칭 ‘여행자 휴대품 검사업무 지침’ 마련

## 2. 여행자 휴대품 유치 및 관세 납부방법 불편

### 【현실태 및 문제점】

#### □ 여행자 휴대품 유치보관료 징수안내 미실시

- 여행자가 수입제한 물품 또는 면세한도(1인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한 휴대품을 반입함에 따라 부과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휴대품을 유치



- 유치된 휴대물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료는 물품의 무게 또는 가격에 따라 유치당일 부터 계상하여 소유자에게 부과

※ 압류물품은 보관료를 징수하지 않고, 예치·반송 화물 보관료는 별도적용

- 물건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이 40만원 미만일 때는 물품의 중량(kg)에 따라 유치 보관료를 부과
- 물품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이 40만원 이상일 때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유치 보관료를 부과

※ 유치된 휴대품은 물품 보관자(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위탁)의 고의 또는 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에 따른 비용과 위험 등에 대한 부담은 휴대품 소유자 책임으로 귀속하도록 규정

※ 유치보관료는 관할세관장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하여 세관마다 보관료율이 다름

<무감가(물건가격 + 관세=40만 이하인 경우) 유치화물 요율>

(단위: 원)

구 분	10kg 이하	30kg 이하	50kg 이하	70kg 이하	100kg 이하	100kg 초과
당 일	4,500	6,800	8,000	9,000	11,300	15,800
3일	5,300	7,500	8,600	9,800	12,000	16,500
6일	5,900	8,100	9,300	10,400	12,600	17,100
}	<생 략>					
30일	11,300	13,500	14,600	15,800	18,000	22,500
30일 초과시 3일 1기당	900	900	900	900	900	900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유감가(물건가격 + 관세=40만 이상인 경우) 유치화물 요율>

(단위: 원)

구 분	40-100만원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당 일	6,800	9,000	11,300	12,500	13,500	15,800	18,000	21,500	23,700	27,000
3일	9,500	13,100	16,500	18,900	21,500	26,400	31,100	37,200	42,200	48,500
6일	12,200	17,100	21,600	25,500	29,300	36,900	44,100	53,000	60,600	69,800
}	<생 략>									
30일	33,800	49,500	63,000	77,600	92,300	121,500	148,500	178,800	208,100	240,800
30일 초과시 3일 1기당	3,000	4,500	5,700	7,200	8,900	11,700	14,400	17,400	20,300	23,700

※세부내용 붙임 2 참조

- 하지만, 공항 및 항만 세관은 ‘유치물품 통관 및 반송안내’를 하면서 유치품 보관기간 및 연장제도에 대해 안내를 실시하나, 유치 보관료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미실시
- 따라서 유치 보관료 발생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치물품 인수 과정에서 유치 보관료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 반송화물 보관료는 ‘유치물품 통관 및 반송안내장’에 포함하여 안내

## <유치물품 통관 및 반송안내>

**유치물품 통관 및 반송안내**

1.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지하1층 휴대품과) 2014. 11월 4

-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자 하는 경우 수입통관을 하여야 하며, 아래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로 가지기 바랍니다.
- 통관장소 및 시간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에서 24시간 통관 가능
- 구비서류
  - 본인통관시 : 휴대품유지증, 여권 또는 신분증, 가격자료(영수증 또는 INVOICE), 휴대전송사용시(휴대폰과 비지)
  - 위임통관시 : 본인통관시 구비서류에 추가로 위임장, 위임자 여권사본,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 **특정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아래 [표]참조**
- 문의전화 : 휴대품과 (032) 722-4425, 4432
- 화물 취급수수료 확인(한국관세무예개발원) : 문의전화 (032)740-4132(주선), 4133(18시 이후) ■ 보관료는 관세등과 별도로 현금납부

휴대품과 약도 (동편 지하 1층)		휴대품과	
외환은행	병원	감시과	인간공황 동편(A구역) 3번 출입구 옆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지하1층으로 내려오신 후 약도 참조 바랍니다.
약국	미용실		

2. 외국으로 다시 가져가는 경우(3층 출국경내 세관반송대)

4. 유치된 날로부터 정채(보관)기간 1개월(다만, 식물검역20일, 동물검역15일) 내에 물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 1개월 이후에 물품을 찾아가지자 할 경우에는 정채기간 경과전에 정채기간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개월 연장가능)
- 인터넷 신청 ⇒ 관세청(<http://www.customs.go.kr>) ⇒ 웹페이지 ⇒ 민원서비스 ⇒ 정채기간연장신청 ⇒ 연장신청하기(등록확인)
- 문의 : 세관 휴대품과(032-722-4425), 한국관세무예개발원(032-740-4132), 능륜수산업진흥(본부)동물 : (032-740-2660), 식물 : (032-740-2077)
- 정채기간 경과후에는 관세청에 따라 관세 회기 국고납부처 불합리한 동시물 검열은 관세청에서 연장 신청으로도 실현 연장신청하여 합니다

## <연도별 여행자(입국자) 휴대품 유치품목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유명 상표	핸드백	3,855	3,395	2,266
	시 계	721	740	865
	기 타	668	535	458
	합 계	5,244	4,670	3,589
의약품		45,946	45,376	45,904
주 류		6,634	4,459	5,387
담배류		10,243	8,478	13,249
귀금속·보석류		595	504	592
화장품·향수류		825	781	659
라텍스		207	21	12
기 타		55,157	70,769	73,321
합 계		124,851	135,058	142,713

자료) 관세청

### □ 휴대품 압류전 체납관세 자진납부 기회 미부여

- 여행자 의사에 관계없이 체납관세 징수를 위한 휴대품 압류로 불편야기
  - 관세체납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관리하여 입국시 휴대품검사를 통해 체납관세에 상응하는 휴대품 등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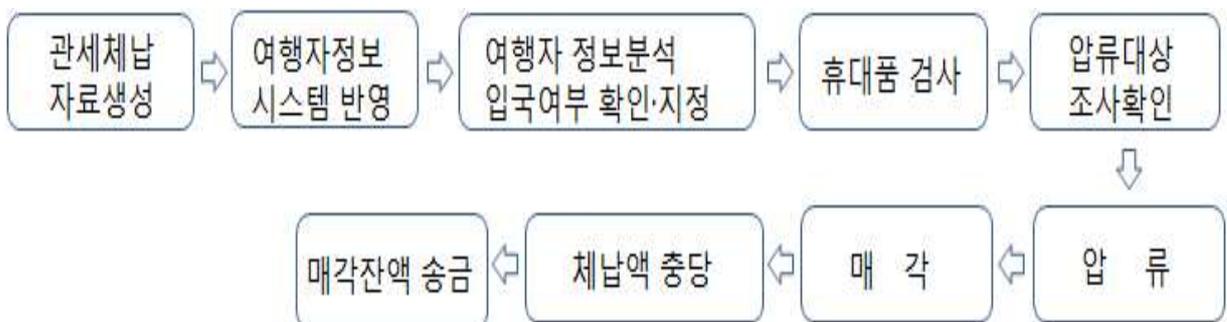
※ 여행자 휴대품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에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 및 면세 범위 이내 물품은 압류대상에 제외

**<압류금지재산(「국세징수법」제31조)>**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하지만, 관세체납자가 체납관세를 자진하여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체납관세에 상응하는 휴대품 등을 압류
- 따라서 관세체납자가 체납관세를 납부한 후 압류장소(공항, 항만세관 등)를 다시 방문하여 압류물품을 인수하는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소요 등으로 불편호소

**<관세체납자 휴대품 체납처분 처리절차>**



## □ 관세 납부방법 제한적 운영에 따른 불편초래

- 여행자의 휴대품이 1명당 관세면제금액(미화 600 달러/인당)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
    - 1명당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단일 간이세율 20%를 적용(녹용, 방향용 화장품 등은 제외)
    -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물품의 전체가격에 대하여 물품별 간이세율 적용
  - 관세납부방법을 사후납부방법과 신용카드 납부방법으로 제한하여 운영함에 따른 불편초래
    - 사후납부방법은 관세를 납부한 후 유치품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이행 등이 필연적이고,
    - 신용카드 납부방법은 인천공항 보세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관세액의 1%를 카드수수료로 추가 징구하여 민원발생
- ※ 신용카드 납부는 인천공항 보세구역에 설치된 수납기기 또는 직접 관세청 리더기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
- ※ 국세, 지방세 등은 국내 모든 은행에 설치된 자동금융거래단말기(ATM, Automatic Teller's Machine), 모바일 앱,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 없이 납부가능



<사진 2> 인천공항에 설치된 신용카드 납부기기



<사진 3> 세관검사대에 설치된 신용카드 리더기

## **【개선방안】**

### **□ 휴대품 유치 및 관세 납부방법 개선**

#### **○ 휴대품 유치보관료 징수 사전안내 실시**

- 여행자가 휴대품 유치보관료 발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실시하여 여행자의 경제적 부담최소화 및 민원 발생 사전예방

☞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개정

#### **○ 체납관세 자진납부기회 부여**

- 체납관세 징수목적으로 관세체납자의 휴대품을 압류 전에 공항 또는 항만 입국장에서 체납관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압류로 인한 부담 및 불편해소

☞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

#### **○ 관세 납부방법 다양화**

- 관세 납부방법을 사후납부 및 신용카드방법 외에 자동금융거래 단말기(ATM, Automatic Teller's Machine)을 이용한 자동이체, 모바일 앱,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여행편의 도모

※ 자동이체방법을 이용할 경우 지인을 통해 공항 및 항만 외 지역에서 관세 납부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

### 3. 휴대품 미신고자 처벌관련 기준 모호

#### 【현실태 및 문제점】

#### □ 가산제 징수와 밀수출입죄 적용을 위한 운영기준 미비

- 여행자가 면세한도 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할 관세액의 100분의 40(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관세법」 제241조제5항)

※ 휴대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관세액의 30% 감면(최대 15만원 까지 감면, 「관세법」 제96조제2항)

- 그런가하면, 동일사안에 대해 밀수출입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관세법」 제269조)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한 벌금(「관세법」 제269조제2항)

- 따라서, 밀수출입죄 적용대상 기준이 모호하여 통관검사 담당자의 자의적 재량권행사로 민원발생 및 부정부패 발생여지 상존

- 수출입금지물품(「관세법」 제234조)을 수출하거나 수입한자 등에 적용하는 밀수출입죄 기준이 모호하고,

-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관련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관담당자의 주관 및 재량에 따라 가산세 부과, 밀수출입죄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 민원발생 및 부패여지 상존

<주요민원사례>

- ▶ 세관직원이 저에게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취직은 물론 이직도 힘들다’라는 말을 해 3시간 동안 너무 억울하고 두려웠다.(국민신문고, '15. 6.)
- ▶ 세관직원이 ‘신분상에 범죄자로 기록될 수 있다.’ ‘사법처리하면 사람들이 들이닥쳐 가방을 압류할 것이다’ 등의 말로 겁을 주고 서명하게 만들었다.(국민신문고, '15. 6.)
- ▶ 세관원이 조사실로 들어와 통고처분 조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이방에서 절대 못나가고 아무도 들어올 수도 연락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처분을 받아들이겠느냐, 전과자가 되겠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통고처분에 강제로 동의하였다.(국민신문고, '14. 4.)

※ 여행자가 면세한도 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기준(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택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 ④ 생략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4.12.23.>  
 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제9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생략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 **【개선방안】**

### **□ 휴대폰 미신고자 처벌관련 기준 명확화**

#### **○ 휴대폰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관련 운영기준 마련**

-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 부과, 밀수출입죄 적용에 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검사담당자의 자의적 재량행위 제한

※ 법원도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법원이 범죄유형별로 지켜야할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 무지 또는 소액 미신고자 등에게도 ‘밀수출입죄’ 적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예방

☞ 가칭 ‘여행자 휴대폰 검사업무 지침’ 마련

## IV.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15. 11.
- 대상기관 : 관세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16. 12.

세 부 개 선 과 제	관계법령	관계기관
<input type="checkbox"/> <b>여행자 휴대품 검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품 검사 법적근거 안내제도 도입</li> <li>○ 휴대품 검사 전용공간 설치 의무화</li> <li>○ 여행자 성(性)별에 따라 검사담당자 배정 원칙 도입</li> </ul>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또는 가칭 ‘여행자 휴대품 검사 업무 지침’ 마련	관세청
<input type="checkbox"/> <b>휴대품 유치 및 관세 납부방법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품 유치보관료 징수 사전안내 실시</li> <li>○ 체납관세 자진납부기회 부여</li> <li>○ 관세 납부방법 다양화</li> </ul>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개정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	
<input type="checkbox"/> <b>휴대품 미신고자 처벌관련 기준 명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품 미신고자 처벌관련 운영기준 마련</li> </ul>	가칭 ‘여행자 휴대품 검사업무 지침’ 마련 「관세법」 제269조 개정	

붙임 1

<무감가(물건가격 + 관세=40만 이하인 경우) 유치화물 요율>

(단위: 원)

구 분	10kg 이하	30kg 이하	50kg 이하	70kg 이하	100kg 이하	100kg 초과
당 일	4,500	6,800	8,000	9,000	11,300	15,800
3일	5,300	7,500	8,600	9,800	12,000	16,500
6일	5,900	8,100	9,300	10,400	12,600	17,100
9일	6,600	8,900	9,900	11,100	13,400	17,900
12일	7,200	9,500	10,700	11,700	14,000	18,500
15일	8,000	10,200	11,300	12,500	14,700	19,200
18일	8,600	10,800	11,900	13,100	15,300	19,800
21일	9,200	11,400	12,600	13,700	15,900	20,400
24일	9,900	12,200	13,200	14,400	16,700	21,200
27일	10,500	12,800	14,000	15,000	17,300	21,800
30일	11,300	13,500	14,600	15,800	18,000	22,500
30일 초과시 3일 1기당	900	900	900	900	900	900

※ 할증료

- 특수보관화물 할증
  - 대상: 냉동·냉장물품, 귀금속류, 무기류
  - 할증률: 상기 요율에 30% 할증
- 체화화물은 채화일수에 대하여 10% 할증

붙임 2

<유감가(물건가격 + 관세=40만 이상인 경우) 유치화물 요율>

(단위: 원)

구 분	40-100 만원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당 일	6,800	9,000	11,300	12,500	13,500	15,800	18,000	21,500	23,700	27,000
3일	9,500	13,100	16,500	18,900	21,500	26,400	31,100	37,200	42,200	48,500
6일	12,200	17,100	21,600	25,500	29,300	36,900	44,100	53,000	60,600	69,800
9일	14,900	21,200	25,900	32,000	37,200	47,600	57,200	68,700	79,100	91,200
12일	17,600	25,200	32,000	38,600	45,000	58,100	70,200	84,500	97,500	112,500
15일	20,300	29,300	37,200	45,000	53,000	68,700	83,300	100,200	116,000	134,000
18일	23,000	33,300	42,300	51,500	60,800	79,200	96,300	115,800	134,300	155,300
21일	25,700	37,400	47,400	58,100	68,600	89,700	109,400	131,600	152,700	175,600
24일	28,400	41,400	52,700	64,500	76,500	100,400	122,400	147,300	171,200	198,000
27일	31,100	45,500	57,800	71,100	84,300	110,900	135,500	163,100	189,600	219,300
30일	33,800	49,500	63,000	77,600	92,300	121,500	148,500	178,800	208,100	240,800
30일 초과시 3일 1기당	3,000	4,500	5,700	7,200	8,900	11,700	14,400	17,400	20,300	23,700